

# 멕시코의 광업 관련 환경기준 법제

신청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 환경기술팀

## I. 서론

광물 자원의 개발은 산림이나 자연생태지구를 파괴치고, 도로를 건설함은 물론 상당한 수자원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업은 환경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려는 산업 분야로서, 각국은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을 정립하고 광물자원개발권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은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광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광물산업 생산이 전체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광물분야에 대해 1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중남미 최대이자 세계 4번째의 광물분야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되었다.<sup>1)</sup>

멕시코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자 환경보호를 위하여 광업 관련 환경규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등의 광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과 나란히 자국의 환경 관련 법제를 구축하였다.

이하에서는 멕시코 환경 관련 법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1) 법제처, “멕시코 환경법제 주요내용 소개”, 중남미지역 환경법제정보(2013. 11), 12면 참조.

한 환경기준 관련 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실패를 본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멕시코 환경기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향후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사업권을 자산거래 등으로 취득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고찰하기로 한다.

## II. 멕시코 환경 관련 법제의 개관

### 1. 환경 관련 법률

멕시코에서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다. 먼저 멕시코 헌법 제2장 제3절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sup>2)</sup> 헌법 제4조는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건강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분하고 수용가능하며 여유 있는 개인의 수자원에 대한 위생적인 접근권 또한 규정하고 있다.<sup>3)</sup> 또한 헌법 제27조는 국토, 수자원, 원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소유의 원칙을, 동법 제25조는 민간 부문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 자원에 대한 환경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어 헌법 제73조는 연방 의회에, 연방, 주 및 지방자치 정부에 대하여 그 관할 범위 내에서 환경의 보호와 보존 및 생태적 균형의 복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멕시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 생태 복원과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균형 및 환경보호 일반법」(General Law on Ecological Equi-

2)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Environment 2015: Mexico*, Latin Lawyer Rederence, 2015. 4. 21, <http://latinlawyer.com/reference/topics/51/jurisdictions/16/mexico/> (최종방문 2015. 10. 26), §1.

3)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Mexico: Environmental & Climate Change Law 2015*, §1.1, <http://www.iclg.co.uk/practice-areas/environment-and-climate-change-law/environment-and-climate-change-law-2015/mexico> (최종방문 2016. 3. 7).

4) Ibid.

5)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2.

librium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GEEPA)<sup>6)</sup> 및 관련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의 예방 및 종합적 관리에 관한 일반법 및 관련 규정(General Law on the Prevention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aste(LGPGIR) and its Regulations)도 헌법에 따라 환경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 일반법 및 관련 규정(General Law on Wildlife(LGVS) and its Regulations), 기후변화 일반법 및 국가 배출등록 규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LGCC) and its Regulations on the National Registry of Emissions), 국가 수자원법 및 관련 규정(National Waters Law(LAN) and its Regulations),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일반법 및 관련 규정(General Law on Sustainable Forestry Development(LGDFS) and its Regulations), 연방 환경책임법(Federal Law on Environmental Liability : LFRA) 등도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과 생태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은 멕시코 환경 법제들은 오염원을 감소시키고, 분리 및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며, 생화학, 화학, 물리 및 열처리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한 종합적 처리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의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환경 보호에 있어 보건, 환경적, 기술적 및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멕시코 사회 전반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환경 보호 활동을 장려하며, 환경 복구와 복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sup>8)</sup>

## 2. 환경 관련 부처

멕시코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연방 환경자원부(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SEMARANT)이다. 즉, 이 연방 환경자원부는 지하자원 및 환경 서비스의 이용과 지속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 멕시코의

6) 법제처, “멕시코 환경법제 주요내용 소개”, 중남미지역 환경법제정보(2013. 11), 13-17면 참조.

7) Jose Luis Rendon, Mexico, Environmental & climate Regulation 2016, Law Business Research(2015), §1;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3, §2.

8) Felipe Olmedo, US-Mexico Border 2020: Environmental Enforcement Workshop(2013. 6. 13), Slide No.2, <http://www.epa.gov/sites/production/files/documents/b2020-enf2013-workshop-mexico-law-en.pdf> (최종방문 2016. 3. 7).

생태계, 지하자원 및 환경에 대한 보호, 복원 및 보전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sup>9)</sup> 여기에는 국가수자원위원회(National Water Commission : CONAGUA), 연방 환경 보호 감시청(Federal Prosecutor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PROFEPA), 국가생태국가기후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Climate Change : INECC), 국가자연지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Natural Protected Areas : CONANP),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ry Commission : CONAFOR) 및 멕시코수자원기술연구원(Mexican Institute of Water Technology : IMTA) 등이 속해 있다.<sup>10)</sup>

### Ⅲ.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기준 법제

#### 1.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 법제

광물자원의 개발은 지표면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바, 생태학적 균형 및 환경보호 일반법(LGEEPA)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개발자들은 모든 광업 활동에 대한 예비환경영향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물자원 개발자는 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각종 면허와 허가 또한 받아야 한다.<sup>11)</sup>

한편, 멕시코 연방 환경자원부는 광물자원 개발운영자 등이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멕시코에서 69인의 광물자원 개발운영자가 환경보호인증서(Clean Industry certificate)를 발급받았으며 24인이 심사 중에 있다.<sup>12)</sup> 지난 6년 동안 광업 산업계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sup>13)</sup>

9)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supra note 3.

10) Ibid.

11) [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 (최종방문 2016. 3. 7).

12) PwC, Mexico, Mining in America(2012), p.7.

13) [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 (최종방문 2016. 3. 7).

## 2.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환경 기준

### (1) 지표면 관련 기준

멕시코 정부는 연방 환경자원부 규칙-120호(NOM-120-SEMARNAT-2011 : 특정지역에서의 광물자원 직접 개발활동 관련 환경 보호 기준)를 발령하여 지표면에서의 광물자원 탐사 등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지표면 탐사는 채굴이나 개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시추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표면 탐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방환경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14)</sup> 그렇지만 대부분의 탐사 회사들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실행하는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예방정보(Informe Preventivo)를 제출하고 있다.<sup>15)</sup> 이 규칙은 광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물론, 농업, 축산, 비경작 지역, 건조초원지대, 열대 낙엽림지역, 침엽상록림 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광업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이 규칙에 따라 광업 사업자는 개발사업 이후 재녹화에 있어 95%의 생존율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sup>17)</sup>

### (2) 잔여물 관련 기준

연방 환경자원부 규칙-157호(NOM-157-SEMARNAT-2009 : 광물잔여물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요소 및 절차)는 광업 잔여물(mining waste)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요구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up>18)</sup> 이 규칙은 잔여물의 위험성

14) [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 (최종방문 2016. 3. 7).

15) Ibid.

16) <http://www.bdlaw.com/news-1362.html> (최종방문 2016. 3. 7).

17) NOM-120-SEMARNAT-2011, § 4.1.19.

18)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Environment-Climate-Change/Mexico/Hogan-Lovells-BSTL/New-provisions-for-integral-waste-handling-operations> (최종방문 2016. 3. 7).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잔여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규정하고 있다.<sup>19)</sup> 잔여물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sup>20)</sup>

〈표 1〉 잔여물 위험성 판단기준

광물처리 단계	잔여물에 대한 테스트
채굴 및 광물처리	전체 집중도(total concentration)
	이동성(Mobility)
	산성 배액의 잠재적 생성 (potential generation of drainage acid)
열이나 물을 이용한 처리를 통한 금속생산	전체 집중도
	이동성
	수용 잔여물의 산성도

전체 집중도가 base seca의 최대허용치보다 큰 경우에는 이동성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PECT와 base seca에 있어 독성 구성성분의 최대 허용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sup>21)</sup>

〈표 2〉 독성 구성성분 최대 허용치

오염원	최대허용기준(mg/L)	최대허용기준(mg/kg)
	PECT	Base seca
안티몬	0.53	10.6
비소	5.00	100
바륨	100	2,000

19) NOM-157-SEMARNAT-2009, §§ 5.4.1, 5.4.2.

20) NOM-157-SEMARNAT-2009, §§ 5.4.2.2.

21) NOM-157-SEMARNAT-2009, § 5.4.2.4.1.

오염원	최대허용기준(mg/L)	최대허용기준(mg/kg)
	PECT	Base seca
베릴륨	1.22	24.4
카드늄	1.00	20
크롬	5.00	100
수은	0.20	4
은	5.00	100
납	5.00	100
셀레늄	1.00	20

이 규칙은 또한 산성배액의 잠재적 생성에 대한 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22)</sup>

〈표 3〉 산성배액 생성 결정기준

기준	분류	위험도
PN/PA $\leq$ 3	산성배액의 생성	위험
PN/PA $\geq$ 3	산성배액의 비생성	비위험

### (3) 구리 침전물 관련 기준

한편, 멕시코 정부는 구리의 침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환경부 규칙-159호 (NOM-159-SEMARNAT-2011)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시추 채굴(situ mining)에는 적용되지 않고, 슬랩(slabs) 및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구리 침출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위험 잔여물(waste)과 산성 배액(acid drainage)의 분류와

22) NOM-157-SEMARNAT-2009, § 5.4.2.6.2.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sup>23)</sup> 아울러 광업 사업장의 성분분석과 복원, 산림에 대한 환경영향분석<sup>24)</sup>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건설, 통제 및 폐쇄는 물론 그 감시(monitor)와 폐쇄 이후의 감시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sup>25)</sup>

### 3. 토양오염 관련 환경기준

#### (1) 배상기준

국제환경법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멕시코에서도 오염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sup>26)</sup> 따라서 「폐기물의 예방 및 종합적 관리에 관한 일반법(LGPGIR)」은 오염자로 하여금 오염된 사업장이나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은 물론 복원 조치 또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7)</sup>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오염된 사업장이나 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광업 사업권자(concession holders)는 해당 사업장이나 지역에 대한 복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sup>28)</sup> 이 복원에 대한 책임은 위 소유자와 점유자가 오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만일 광업 사업권자가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운영함에 있어 중금속을 유출시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위 사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소유자와 점유자도 해당 토지의 복원에 대하여는 위 사업권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만일 소유자와 점유자가 위 복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경우 이들은 실제 오염자(actual contaminating party)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자는 멕시코 환경자원부에 대하여 실제 오염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23) NOM-159-SEMARNAT-2011, § 5.2.

24) NOM-159-SEMARNAT-2011, §§ 5.3., 5.4, 5.5.

25) NOM-159-SEMARNAT-2011, §§ 5.6., 5.7, 5.8.

26)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2, §11.

27) Jose Luis Rendon, *supra* note 7, § 3.

28) *Ibid.*



하며, 이 경우 위 당국의 허가를 받아 구제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된 구제 활동(remedial actions)을 수행하여야 한다.<sup>29)</sup>

## (2) 중금속 허용기준

멕시코 정부는 토양 오염과 관련하여 중금속 및 탄화수소의 최대 허용기준을 정립하였다. 우선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연방 환경자원부 규칙-147호(NOM-147-SEMARNAT/SSA1-2004: 특정 중금속 등 오염 토양의 복원 농도 설정을 위한 기준)이다. 이 규칙은 비소(arsenic), 바륨(barium), 베릴륨(beryllium), 카드뮴(cadmium), 크롬Ⅵ(chrome Ⅵ), 수은(mercury), 니켈, 은, 납, 셀레늄(selenium), 탈륨(thallium), 바나듐(vanadium) 등 중금속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장이 발견된 경우, 이 사업장은 오염된 것으로 보며 환경복원(remediation)이 진행되어야 한다.<sup>30)</sup> 이 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이 오염되었는지 판단하고 환경복원이 필요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금속이 발생적으로 사업장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허용기준은 인위적인 산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을 성분분석하고(characterize)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복원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31)</sup>

위 규칙은 토지 사용에 있어 중금속 농도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립하고 있다.<sup>32)</sup>

29)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2, §11.

30) Anthony J. Maggio, Mexico: Environmental due diligence and the Mexican Waste Law, EHS Journal(2010. 11. 13), <http://ehsjournal.org/http://ehsjournal.org/anthony-j-maggio/mexico-environmental-due-diligence-and-the-mexican-waste-law/2010/> (최종방문 2016. 3. 7).

31) Ibid.

32) NOM-147-SEMARNAT/SSA1-2004, §5.1.1.

〈표 4〉 토지의 중금속 농도 기준

중금속	농업/주거/상업용지(mg/kg)	산업용지(mg/kg)
비스	22	250
바륨	5,400	67,000
베릴륨	150	1,900
카드뮴	37	450
크롬Ⅵ	289	510
수은	23	310
니켈	1,600	20,000
은	390	5,100
납	400	800
셀레늄	390	5,100
탈륨	5.2	67
바나듐	78	1,000

이 기준은 국제 기준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보건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론 및 오염사업장 복원 방법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 중금속 농도 기준은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나 기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 토지 사용 조건하에서 중금속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sup>33)</sup>

### (3) 탄화수소 허용기준

한편, 멕시코 정부는 연방 환경자원부 규칙-138호(NOM-138-SEMARNAT/SSA1-2012: 토양 내 탄화수소 최대허용기준 및 복원 목적의 특성 및 규격 관련 시료 채취 기준)를 발표하여 토양에 대한 탄화수소(원유·가스)의 최대 허용기준을 정립하였

33) Anthony J. Maggio, supra note 12.

다. 즉, 토양에 대한 탄화수소 최대 허용기준은 물론 복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이다.<sup>34)</sup>

이 규칙은 우선 오염원으로 간주되는 탄화수소들을 규정하고, 중량에 따라 탄화수소 및 특정 탄화수소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을 정립하였다.<sup>35)</sup> 탄화수소혼합물(hydrocarbon mixture)에 대하여 이 규칙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도록 강제하고 있다.<sup>36)</sup> 또한 이 규칙은 샘플링 지점, 보관 온도 및 기간,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포함한 성분분석(characterization)과 복원을 위한 토양 샘플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 4. 광구개발권 거래와 환경문제

우리 기업들은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권을 직접 취득하여 운영할 만큼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고도의 기술과 정확한 정보 및 축적된 경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기업들은 광물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광구개발권을 매수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광구개발권에 대한 취득은 직접 그 광구개발권을 거래를 통해 인수하는 자산거래 계약과 그 광구개발권을 가지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8)</sup>

멕시코에서 광구개발권 거래를 통하여 특정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책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멕시코의 환경 법제가 갈수록 복잡화·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광구개발권을 자산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

34) Madeliene Boyer Kadas, Mexico Highlights, Environmental Law Portal(Vol. III, 2013, <http://www.environmentallawportal.com/mexico-environmental-developments-Q3-2013> (최종방문 2016. 3. 7)).

35) NOM-138-SEMARNAT/SSA1-2012, § 6.

36) Ibid.

37) NOM-138-SEMARNAT/SSA1-2012, §§ 7., 8.

38) 거래를 통한 자원개발권의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일석, 원유·가스탐사개발 계약에 있어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2), 103-137면 참조.

여 발생한 환경책임은 이전되지 않지만, 자산과 관련된 환경책임은 거래되는 자산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광구개발권의 매수인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광물자원개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염에 대한 환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sup>39)</sup> 특히,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의 광구개발권을 자산으로 취득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40)</sup> 이와 같이 오염된 사업장의 매수인은, 연방 환경자원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광구개발권 거래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오염에 대하여 환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41)</sup> 한편, LGPGIR 및 관련 규칙들은 연방 환경자원부의 허가 없이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s*)에 의하여 오염된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sup>42)</sup>

그렇지만 주식양도계약의 경우는 환경책임은 위 자산거래와 다르다. 즉, 토양오염이 발생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 위 연방 환경자원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토양오염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 또는 개인은 그 주식 보유의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책임을 부담하게 된다.<sup>43)</sup>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광구개발권을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환경오염 발생 여부와 그 책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실사(*due diligence*)<sup>44)</sup>하여야 한다.<sup>45)</sup> 즉,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광구개발권 취득 이전에 실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부지환경평가(*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제1단계와 제2단계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sup>46)</sup> 멕시코 환경 당국이

39) Jose Luis Rendon, Mexico, *supra* note 7, § 15.

40)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2, §14.

41) Jose Luis Rendon, Mexico, *supra* note 7, § 15.

42) *Ibid.*

43)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supra* note 2, §14.

44) 광물자원 등 탐사개발권의 취득과 관련된 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 144-152면 참조.

45) Anthony J. Maggio, *supra* note 12.

46) Jose Luis Rendon, Mexico, *supra* note 7, § 16.

오염된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를 복원하고 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입증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사를 깊이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sup>47)</sup>

#### IV. 시사점 및 결론

멕시코 정부는 지표면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방 환경자원부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탐사개발 회사 등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행에 관한 예방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광물에서의 잔여물의 위험성 정도 결정기준, 독성 구성성분의 최대허용치 및 산성배액의 잠재적 생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광물자원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복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 환경기준 법제는 비소, 바륨, 베릴륨, 카드뮴, 크롬Ⅵ, 수은, 니켈, 은, 납, 셀레늄, 탈륨, 바나듐 등에 대한 농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도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 오염자부담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광물자원개발사업자는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광물자원개발사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염을 발생시킨 위 사업자는 그 오염사건에 대하여 연방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구제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관련 구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에서 자산거래를 통해 광구개발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산과 관련된 환경책임은 거래되는 자산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광구개발권의 매수인도,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광물자원 개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염에 대한 환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의 광구개발권을 자산으로 취득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복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7) Ibid.

이와 같은 환경책임은 엄청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게 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위험에 대한 책임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기준 법제와 환경책임 법제를 참고하여, 매수 대상인 자산의 해당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책임에 대하여 정확하게 실사하여야 한다. 또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위 환경기준 법제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환경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오 일 석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 법제처, “멕시코 환경법제 주요내용 소개”, 중남미지역 환경법제정보, 2013. 11.
- Madeliene Boyer Kadas, Mexico Highlights, Environmental Law Portal(Vol. III, 2013, <http://www.environmentallawportal.com/mexico-environmental-developments-Q3-2013> (최종방문 2016. 3. 7).
-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Mexico: Environmental & Climate Change Law 2015, §1.1, <http://www.iclg.co.uk/practice-areas/environment-and-climate-change-law/environment-and-climate-change-law-2015/mexico> (최종방문 2016. 3. 7).
- Anthony J. Maggio, Mexico: Environmental due diligence and the Mexican Waste Law, EHS Journal(2010. 11. 13), <http://ehsjournal.org/http://ehsjournal.org/anthony-j-maggio/mexico-environmental-due-diligence-and-the-mexican-waste-law/2010/> (최종방문 2016. 3. 7).
- Felipe Olmedo, US-Mexico Border 2020: Environmental Enforcement Workshop(2013. 6. 13), Slide No.2, <http://www.epa.gov/sites/production/files/documents/b2020-enf2013-workshop-mexico-law-en.pdf> (최종방문 2016. 3. 7).
- Adrián del Paso Puente and Denisse Blanck Kahan, Environment 2015: Mexico, Latin Lawyer Rederence, 2015. 4. 21, <http://latinlawyer.com/reference/topics/51/jurisdictions/16/mexico/> (최종방문 2015. 10. 26).
- PwC, Mexico, Mining in America, 2012.
- Jose Luis Rendon, Mexico, Environmental & climate Regulation 2016, Law Business Research, 2015. [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http://www.almadexminerals.com/RESPONSIBILITY/Mining_Mexico.html) (최종방문 2016. 3. 7).
- <http://www.bdlaw.com/news-1362.html> (최종방문 2016. 3. 7).
-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Environment-Climate-Change/Mexico/Hogan-Lovells-BSTL/New-provisions-for-integral-waste-handling-operations> (최종방문 2016. 3. 7).